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9월 25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 지원코드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 항공A | 전문임기제 가급 (항공사고조사관) | 1명 | 채용일 ~ '25년 8월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세종) |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채용기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 지원코드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
| 항공A | 전문임기제 가급 (항공사고조사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항공사고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전문분야: 조종-고정익)항공분과위원회 안전보고 및 회의록 작성안전권고 발행 및 이행실적 확인항공사고조사 업무개선 및 사고 예방 활동사고조사 시 확보된 자료관리 및 사고조사 장비운영기타 항공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업무 등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9341호)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4608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34494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180호)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훈령 제40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요건: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 코드번호 |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
| 항공A | 항공사고조사관(조종-고정익) | 전문임기제 가급 | 1명 |

| |
|--------------------|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세종) |

| | |
|--------------|--|
| 주요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사고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전문분야: 조종-고정익) ○ 항공분과위원회 안전보고 및 회의록 작성 ○ 안전권고 발행 및 이행실적 확인 ○ 항공사고조사 업무개선 및 사고 예방 활동 ○ 사고조사 시 확보된 자료관리 및 사고조사 장비운영 |
|--------------|--|

| | |
|--------------|--|
| 필요 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전략적 사고력, 기술적 전문지식, 환경변화 분석력 |
|--------------|--|

| | |
|--------------|--|
| 필요 지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 지식 ○ 항공조종(고정익) 분야 업무경험과 지식 ○ 영어 대화 및 문서교류를 위한 영어 활용 지식 ○ 항공사고에 관한 지식 |
|--------------|--|

| | | |
|---------------|--|---|
| 응시자격요건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
| | 자격증(경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운송용 항공기(비행기) 3,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항공기(비행기) 비행시간이 총 5,000시간 이상(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 전의 비행시간을 포함한다) 2. 기장 근무경력 |
| 우대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분야 관련된 실무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 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은 우대요건 평가에서 제외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개수별 차등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 영어능력검정시험 어학성적 소지자(기준점수 이상 시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플(TOEFL), 토익(TOEIC), 텡스(TEPS), 지텔프(G-텔프)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종목/등급별 차등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전자계산기, 정토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기타(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舊 컴퓨터활용능력 3급, 舊 워드프로세서 2.3급) |
| | <p>*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에서 항공조종(고정익)분야 사고조사 업무 또는 안전관리감독 업무 수행 경력 2.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등에서 항공조종(고정익)분야 업무수행 경력 |
| 가산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소지자 |

| |
|---|
|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p><경력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직무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상근, 비상근, 주당근무시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폐업 등의 이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 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 <p><우대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최대 7년, 연차별 차등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응시자격 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은 우대요건 평가에서 제외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최대 3개, 개수별 차등우대) |

-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음(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영어능력검정시험 어학성적 소지자(기준점수 이상 시 우대)**

- 토플(TOEFL), 토익(TOEIC), 텡스(TEPS), 지텔프(G-텔프)

* 시험성적 유효기간(2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내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예정일(서류 전형심사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 **기준점수** : 토플(TOEFL) PBT 530점 이상 / 토익(TOEIC) 700점 이상 / 텡스(TEPS) 340점 이상 / 지텔프(G-TELP) LEVEL 2의 65점 이상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종목/등급별 차등우대)**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기타(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舊 컴퓨터활용능력 3급, 舊 워드프로세서 2.3급)

※ **직무분야** : 항공조종(고정익)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시 차등 우대**

| 구분 | 5점 | 3점 | 1점 |
|---------|----|----|----|
| 한국사능력검정 | 1급 | 2급 | 3급 |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18.1.1. 이후 실시된 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하나 응시인원이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간별 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① (응시인원이 3배수 이하인 경우) 소극적 서류전형
 - ② (응시인원이 3배수 초과 5배수 이하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을 통해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③ (응시인원이 5배수 초과 7배수 이하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을 통해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④ (응시인원이 7배수 초과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을 통해 **7배수**로 합격자 결정

※ 소극적 서류전형 기준

1. 응시자격요건(공통요건, 자격증, 경력 등)

※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

1. 응시자격요건(공통요건, 자격증, 경력 등)
2. 자기소개서
3. 직무수행 계획서
4. 우대 요건 및 가산점 :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전문지식, 경험·상황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① 또는 ②)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 구분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 일정 | '24.9.25.(수) ~ 10.16.(수) | '24.10.14.(월) ~ 10.16.(수) | '24.10.25.(금) 예정 | '24.11.6.(수) 예정 | '24.12.5.(목) 예정 |

-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공고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www.araib.molit.go.kr) 및 나라일터 등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www.araib.molit.go.kr)에 게시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10. 14.(월) ~ 10. 16.(수)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604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채용담당자 앞 (전문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44-201-5434

나.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구 분 | 내 용 |
|---|---|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
|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 응시수수료: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우표용 정부수입인지가 아닌 A4규격 인쇄본 정부수입인지는 응시서류철에 재중하여 함께 송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 A4 2매 이내로 작성 |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 별지 서식 제4호 양식으로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
| 6. 대학교 이상 졸업 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 8.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
| 9. 비행경력증명서 사본 1부. |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비행경력증명서(비행시간) 필수 제출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18.1.1일 이후 실시한 시험에 한함 |
| 11. 주민등록 초본 1부 | ○ 남성만 제출(병역관련 사항 이 기재되도록 발급) |
|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 자필 서명 필수 |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5. 12월중 예정이나, 우리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항공A는 채용일로부터 '25년 8월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 구 분 | 2024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
| | 상한액 | 하한액 |
| 전문임기제 가급 | - | 65,346 |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단,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직위에 임용후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음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민원증명' (Public Inquiry Certificate) and '민원증명신청' (Public Inquiry Certificate Application). The '민원증명신청' section lists various application types, with '사실증명신청' (Fact Certificate Application)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The '민원증명' section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service, including the required documents and the application process.

- 기타 문의사항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지원팀(044-201-5434)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20236.29.))에 따라 2024.6.1.부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진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정부입법 개정 추진 중인바, 같은 법 개정시 그에 따라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분야 | 성명 | 생년월일 | 응시자격 |
|------|----|------|------|
| | | | |

▣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합니다.

| 목 록 | 제출여부 |
|---|--------------------------|
| 1. 응시원서(필수) | <input type="checkbox"/> |
| 2. 이력서(필수) | <input type="checkbox"/> |
| 3. 자기소개서(필수) | <input type="checkbox"/> |
| 4. 직무수행계획서(필수) | <input type="checkbox"/> |
| 5. 경력(재직) 증명서(필수) | <input type="checkbox"/> |
| 6. 응시필수 자격증(조종사 자격증명) 사본(필수) | <input type="checkbox"/> |
| 7. 경력(재직) 증명서(필수) | <input type="checkbox"/> |
| 8. 비행경력증명서(필수) | <input type="checkbox"/> |
| 9. 학위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input type="checkbox"/> |
| 10. 우대요건·가점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input type="checkbox"/> |
| 11. 주민등록초본(남성에 한함) | <input type="checkbox"/> |
| 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input type="checkbox"/> |
|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 <input type="checkbox"/> |

* 제출서류 해당 항목에 대하여 √표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집게를 사용하여 편철 제출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인/서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시원서 (원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 응시원서(원본) | | | |
|--------------|------|--------------|-----------------|
|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 응시자격 | | □자격증 | |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 주소 | (우)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 전자우편 | | | |
| 전화 (휴대전화) | | | |

| 응시표 ()시험 | | | |
|-----------|--|------|--------------|
|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 응시자격 | | □자격증 | |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한자) |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 는 아래의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 코드 기재
(예) 전문임기제 가급 / 항공A
 -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에서 선택
(예) 항공A: 자격증에 응시자격 요건이 해당되면 체크·기재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10,000원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장애인연금법」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대상으로서,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 력 서

1. 공통사항

| | | | | | | | |
|----------|----------|----------|-----|----------------|-----|----|--|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항공A | 응시 자격 요건 | 자격증 | 성명 | |
| | | | | | 자격□ | | |

2. 응시자격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 형태 |
| | ex) ○○○○ (○○과) | '16.1.1 ~ 17.12.5 | 과장 (4급) | | 전임 /비전임/시간제 (주 00시간 근무)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 학위 종류 | |
| | ○○○학 | '00.00.00 | | ○○○○ 석사 |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 자격 검정기관 | |
| | ex) 운항관리사 | '00.00.00 | | | |

3. 우대요건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 충족 이후 경력만 작성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 형태 |
| | ○○○○ (○○과) |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 과장 (4급) | *운전직의 경우 '운행차종(인승)'기재예) 대형버스(45인승) | 전임/ 비전임/시간제 (주 00시간 근무) |

| | | | | | |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 자격 검정기관 | |
| | ex) 00기술사 | '00.00.00 | | | |
| 어학 | 시험명 | 등록번호 | 응시일자 | 점수 | 영문성명 |
| | | | | | |

4. 가산점

※ 해당 없을시 삭제

| | | | | |
|-----|------|------|------|------|
| 한국사 | 시험일자 | 인증번호 | 인증등급 | 시행기관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만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학위 제출하고자 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우대요건으로 제출한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어학성적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성적을 제출

- 해당되는 공인 영어능력 검정시험 중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을 작성·제출

자 기 소 개 서

| | | | |
|-----|--|-----------|--|
| 성 명 | | 응시직급 및 분야 | |
|-----|--|-----------|--|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 | | | |
|-----|--|-----------|--|
| 성 명 | | 응시직급 및 분야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사유 | 개인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
|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주민등록번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제공받는 자 | (2) 제공목적 | (3) 제공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인사혁신처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계재일, 처분청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귀하